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가)를 제안합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수 성폭력'은 학문공간인 대학에서 여성의 학습권과 생활권, 더 나아가 노동권과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박탈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에 대학에서 보장되는 교수 지위가 이용됨으로써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교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반면에 되는 수많은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화된 대부분의 교수 성폭력 사건들은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 여성의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해결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 당국은 가해자가 교수라는 공식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점을 무시한 채 교수 성폭력 사건을 남성 교수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하면서 학교 차원의 사건 해결과 예방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해 교수를 보호하거나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대학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대학에 성폭력 예방 활동과 사건 처리를 위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폭력 관련 학칙을 만들어 놓기만 했을 뿐, 대학 자체는 학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 성폭력에 대해서는 학적 자체가 별다른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학칙에 딸라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건 처리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의 자체가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 학생보다는 교수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논의되고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가 성폭력 사건 처리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지금, 각 대학의 반성폭력 활동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여성부는 대학들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 힘들게 이루어진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교육부는 가해 교수의 재임의 요청을 받아 성폭력의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심의하여 성폭력 근절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각 대학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수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와 여성부는 대학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별다른 지도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교수 지위가 이용되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지금, 대학은 교수 성폭력을 사소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서 예방과 사건 처리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부와 여성부는 반성폭력 학칙 세정 저침한 내일 끝 학숙이 어려운 규정으로 제정되고,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수 성폭력 사건의 발생,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딪치고 깨달은 것은 이상의 사실입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교수와 대학, 교육부, 여성부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와 학습권 침해는 결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조금 늦게나마 교수 성폭력 근절과 해결을 위한 공동 활동 모임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가)를 제안 드립니다. 각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종교학생회, 여성위원회, 대학 생활위원회, 학생회, 동아리, 학회 등에서 함께 모여서 그동안 각 학교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교수 성폭력 문제를 개인 교수나 개별 학교를 넘어서 대학 사회 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가)는 이전에 구성되어 활동을 벌였던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와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고민과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2003년 10월 11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www.yonsei.ac.kr/~ysfem / feminist@yonsei.ac.kr / 02-2123-3645)

* 연대 모임의 명칭인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는 연대 모임 제안을 위해서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첫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 첫 회의는 10월 17일(금) 오후 7시에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실(학생회관 3층)에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른 사정으로 이날 직접 회의에는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연대회의를 같이 할 단위가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대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공유하고, 직접 만나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단위들과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통을 해나갈 것입니다.)

* 첫 회의에서는 참가 단위가 속한 대학의 교수 성폭력 사건 발생과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학칙 운영과 예방 교육 실태 등을 서로 공유하고, 연대 모임이 앞으로 진행할 활동들을 논의합니다. 교수 성폭력 사건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 10월 중으로 성폭력 사건으로 파악당한 서강대 H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재심의 결정이 나옵니다. 지난해 동국대 K교수는 동국대 정계위원회에서 해임 정제를 받았으나 교육부 재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 재심의 문제는 동국대나 서강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무시한 채 교수에 대한 징계 정도 여부로만 판단하여 재심의를 내렸으므로써 개별 대학들에서는 성폭력 교수에 대해서 중징계 내리기를 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 '교원재심위원회'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없거나 낮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재심의'의 문제점도 알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구상중인 연대회의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 단위와의 논의를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해임 과정 후 교육부 재심의 요청한 서강대 교수, H교수 사건, 정계전에 사직한 연세대 교수 사건, 총장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 사건, 정직 1개월 결정이 내려진 시립대 K교수 사건 등등) : 교수 성폭력 사건은 개별 단위의 혐의로는 처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폭력 사건 학내 공개에 있어서는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도 필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교수 성폭력 사건은 학내 여성 운동 단위가 없고,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가시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대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더라도 해결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수 성폭력 사례 수집 및 교수 성폭력 문제점 정리를 통한 공론화 : 현재 공식적으로 처리 과정에 있는 교수 성폭력 사건과 여러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은 있었으나 공식화는 되지 못한 사건들도 함께 그 사례를 수집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알려나가는 활동을 합니다.

3. 대학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요구 활동 : 현재의 대학 반성폭력 학칙은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는 가해 교수 징계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보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서강대 K교수 사건과 같이 현재의 학칙은 징계 이후에 같은 교수에 대해서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하는데 있어서는 규정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4. 교수(강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태 조사 및 적극적인 예방 교육 실시 요구: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교수나 강사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책자 발송이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조치이며, 심지어 교수들에게는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성 평등한 대학 만들기' 등의 명칭을 사용한 실효성 없는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적인 예방 교육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사직을 통해 종결되고 있는 교수 성폭력 처리의 문제점 제기: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없이 사직 등의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학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교수의 비태, 학교의 명예 등을 고려하면서 사직을 통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수가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당하면 각각 3년, 5년 동안 교수채용에서 제한되게 됩니다. 결국 '성폭력 교수가 있던 대학'이라는 학교 명예 실추를 피하고 가해 교수의 장래를 위해서 가해 교수가 사직을 하기도 합니다.

* 많은 참여 바랍니다..

